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9,300,000	13,479,000
일반회계		415,900,000	12,477,000
특별회계		33,400,000	1,002,000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2,198,000	65,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49,000	67,47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62,000	19,8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64,000	46,9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61,000	7,83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019,000	240,570
	치수사업특별회계	17,815,000	534,450
	기반시설특별회계	616,000	18,48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6,000	4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20,41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